

# 부 산 가 정 법 원

## 제 1 부

### 심 판

사 건 2010느합00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청 구 인 000 (61년생 남자)

상 대 방

1. 000 (48년생 여자)
2. 000 (55년생 여자)
3. 000 (57년생 여자)
4. 000 (38년생 남자)
5. 000 (65년생 여자)
6. 000 (67년생 여자)
7. 000 (69년생 여자)
8. 000 (72년생 여자)
9. 000 (74년생 남자)
10. 000(65년생 여자)

## 주 문

1. 청구인의 이 사건 기여분 청구를 기각한다.
2.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청구인 및 상대방 000가 각 429/7865, 상대방 000, 000, 000이 각 1859/7865, 상대방 000이 330/7865, 상대방 000, 000, 000, 000, 000이 각 220/7865의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3.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상속인 망 000(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의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50%로 정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청구인의 단독 소유로 한다. 청구인은 상대방 000, 000, 000에게 각 10,705,240원을, 상대방 000에게 2,470,440원을, 상대방 000, 000, 000, 000, 000에게 각 1,646,960원을 각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피상속인은 망 000과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후 망 000와 혼인하였는데 피상속인과 망 000 사이의 자녀로 망 000, 피상속인과 망 000 사이의 자녀로 청구인, 상대방 000, 000, 000, 000가 있다.

나. 망 000은 상대방 000과 혼인하여 슬하에 상대방 000, 000, 000, 000, 000을 두었고, 피상속인 사망 전인 1998. 8월경 사망하였다.

다. 피상속인은 2009. 5월경 망 000는 2011. 2월경 각 사망하였는데, 상대방 000는 피상속인에 대하여 2009. 6월경 상속포기신고를 한 바 있으나 000에 대하여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

라.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별지 1목록 기재와 같이 상속 개시 당시 위 부동산의 시가 합계액은 107,052,400원이다.

마. 피상속인은 1987. 12월경 별지 2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을, 1994. 2월경 같은 목록 제8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을, 1995. 4월경 같은 목록 제11항 기재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별지 2목록 기재와 같이 상속 개시 당시 위 부동산의 시가 합계액은 1,696,041,440원이다.

바. 망 000 및 상대방들(000 제외)은 청구인을 상대로 별지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가합0000, 0000(병합)호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소송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소갑 1호증의 1 내지 3, 소갑 2호증, 소갑 3호증의 1 내지 3, 소갑 4호증, 소갑 5호증의 1 내지 11, 소을 12호증의 각 기재, 심문 전체의 취지

## 2. 청구인의 기여분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주장 요지

청구인은 외아들로서 1984년경부터 약 25년간 집안 대소사를 모두 책임졌고, 피상속인을 봉양하면서 말년에 치매증상까지 보이는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부담하는 등으로 특별히 부양하였으며, 피상속인의 부산000시장 중매인 일을 돕는 등 상속재산의 증가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기여분을 50%로 결정할 것을 구한다.

### 나. 판단

민법 제1008조의 2가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있어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소갑 6호증의 1 내지 6, 소갑 7, 10호증의 각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984년경 혼인한 이후 피상속인 사망시까지 피상속인 부부와 한 집에 살면서부터 외아들로서 피상속인을 부양해 왔고, 1984년경부터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00상회에 입사하여 그 곳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생전에 청구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상속개시시 기준 가액이 합계 1,696,041,440원에 이르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소을 7호증의 각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으로부터 임대소득이 발생하였는데, 망 000가 이 임대소득을 받아 관리해 오면서 청구인 내외와 함께 살던 집의 공과금을 납부하는 등 생활비를 지출해 온 사실 또한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이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생계를 의존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과 상속재산인 부동산 가액을 비교해 볼 때, 만약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청구인의 기여분을 인정한다면 이는 공동상속인인 상대방들과의 공평을 심하게 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청구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기여분 청구는 이유 없다.

## 2.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먼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시점을 기준으로 살펴본 후 망 000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지분을 반영하기로 한다.

### 가.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의 확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방들 및 망 000는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이고, 그 법정상속분은 다음과 같다.

- (1) 망 000 : 3/13
- (2) 청구인 및 상대방 000, 000, 000 : 각 2/13
- (3) 상대방 000 : 상속 포기
- (4) 상대방 000 :  $6/169 (= 2/13 \times 3/13)$
- (5) 상대방 000, 000, 000, 000, 000: 각  $4/169 (= 2/13 \times 2/13)$

### 나. 분할대상 상속재산의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분할대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다. 특별수익 및 그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

(1)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생전에 증여받은 부동산(가액 1,696,041,440원)은 특별수익으로서 상속재산분할에 감안된다.

(2) 청구인은, 별지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그 상속분과는 관계없이 자연적 애정을 바탕으로 배려하는 의미에서 증여한 것이어서 민법 제1008조 소정의 특별수익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

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000, 000, 97스0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증여받은 각 부동산의 가액, 피상속인의 자산의 규모를 종합하여 볼 때, 이는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구체적 상속분의 계산

(1)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방식

우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을 합하여 간주상속재산을 산정하고, 여기에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각 법정상속분액을 산정하며, 다시 여기서 특별수익을 공제하여 공동상속인들의 수정된 상속분을 산정한다. 이 때 만약 어느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특별수익에 대한 반환의무가 없으나, 실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아무런 지분을 가지지 못한다. 이 사건에서는 그 부담방법에 관하여 초과특별수익자를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보고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그 법정상속분(초과특별수익자를 제외했을 때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받는다라는 '초과특별수익자 부존재 의제설'에 따르기로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청구인과 망 000 및 상대방들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2) 간주상속재산: 1,803,093,840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 107,052,400원 + 청구인의 특별수익인 별지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상속 개시 당시 시가 1,696,041,440원)

(3) 법정상속분액

(가) 망 000 : 416,098,578원(= 1,803,093,840원  $\times$  3/1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나) 청구인 및 상대방 000, 000, 000: 각 277,399,052원(= 1,803,093,840원  $\times$  2/13)

(다) 상대방 000: 0원

(라) 상대방 000: 64,015,165원(= 1,803,093,840원  $\times$  6/169)

(마) 상대방 000, 000, 000, 000, 000: 각 42,676,777원(= 1,803,093,840원  $\times$  4/169)

(4) 수정된 상속분(특별수익에 의한 수정)

(가) 청구인: -1,418,642,388원(= 법정상속분액 277,399,052원 - 특별수익 1,696,041,440원)

(나) 망 000 및 상대방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초과특별수익자의 존재로 인해 상속분을 재산정해야 하므로, 망 000 및 상대방들의 수정된 상속분 계산은 생략한다.

(5) 초과특별수익자의 발생 및 나머지 상속인들의 최종 상속분

위 계산에 의하면, 청구인은 초과특별수익자이므로, 청구인을 상속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나머지 공동상속인인 망 000와 상대방들의 상속지분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가) 망 000 : 3/11

(나) 상대방 000, 000, 000: 각 2/11

(다) 상대방 000: 상속 포기

(라) 상대방 000:  $6/143(= 2/11 \times 3/13)$

(마) 상대방 000, 000, 000, 000, 000: 각  $4/143(= 2/11 \times 3/13)$

(6)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피상속인의 처인 000가 사망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청구인과 상대방들의 상속지분을 위 (5)항 최종 상속분에 보태어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  $3/55(= 3/11 \times 1/5)(= 429/7865)$

(나) 상대방 000, 000, 000 : 각  $13/55(= 2/11 + 3/11 \times 1/5)(= 1859/7865)$

(다) 상대방 000 :  $3/55(= 3/11 \times 1/5)(= 429/7865)$

(라) 상대방 000 :  $6/143(= 330/7865)$

(마) 상대방 000, 000, 000, 000, 000 : 각  $4/143(= 220/7865)$

#### 마.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이 사건 기록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과 상대방들(000 제외) 사이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이 사건 결과와 연관되어 처리될 필요가 있고 청구인과 상대방 중 1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게 한 후 그 가액과 자신의 상속분 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을 현금으로 정산하게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대방들이 각 라. (6)항에서 본 최종 상속분의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기로 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기여분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12. 1. 27.

재판장      판사      김상국

                 판사      김영하

                 판사      이준영

## 1 목록

순번	부동산의 표시	상속개시시가액(원)
1	충북 00군 000 과수원 1226 m <sup>2</sup>	21,209,800
2	충북 00군 000-0 과수원 1190 m <sup>2</sup>	20,587,000
3	충북 00군 000 과수원 3772 m <sup>2</sup>	65,255,600
합계		107,052,400

## 2목록

순번	부동산의 표시	상속개시시가액(원)
1	부산 0구 0000-0 대 79㎡	108,704,000
2	부산 0구 0000-0, 0000-0, 0000-0, 0000-00, 0000-00, 0000-00 조표 제38-14765-38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점포 195평 중 52.89㎡	5,712,120
3	부산 0구 0000-0 대 543㎡	942,105,000
4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슬래브지붕2층 주택 1층 103.70㎡, 2층 75.14㎡	35,410,320
5	부산 0구 0000-00 대 73㎡	218,343,000
6	부산 0구 0000-00 대 56㎡	157,416,000
7	위 지상 조표 제678호 목조 아연가 2층주택 1층 66.12㎡, 2층 66.12㎡	8,926,200
8	충북 00군 000-0 과수원 8006㎡	138,503,800
9	충북 00군 000 과수원 1617㎡	27,974,100
10	충북 00군 000 과수원 2079㎡	35,966,700
11	경북 00군 000 답 2878㎡	16,980,200
합계		1,696,041,440